

보도시점 : 2024. 5. 15.(수) 11:00 이후(5. 16.(목) 조간) / 배포 : 2024. 5. 14.(화)

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

-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,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
... 불법 튜닝, 불법명의,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, 경찰청,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.

○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(소음기 개조 등) 이륜차, 타인명의 불법자동차(일명 대포차)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(이륜자동차 단속 강화)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*인 이륜차의 불법튜닝, 안전기준 위반, 번호판 오염·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.

* 지난 6년간(17~22년)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.2%, 교통사고 건수 2.3% 증가(출처: 경찰청)

○ (불법명의 자동차) 미등록 운행,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(대포차) 처벌 강화 법률 개정('24.5.21. 시행)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.

○ (불법자동차)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,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.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.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(△ 30.45%), 불법이륜차(△ 28.06%), 불법튜닝(△ 20.14%) 순이다.

○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(119,369건), 과태료부과(24,974건), 고발 조치(5,010건)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.

- 또한,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“안전신문고 앱”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.
-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“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,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”면서,
- “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·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, 앞으로도 ‘안전신문고’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	책임자	과장	임월시 (044-201-3855)
		담당자	사무관	황선일 (044-201-3860)
<안전신문고>	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	책임자	과장	지만석 (044-205-42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훈 (044-205-4226)



참고 1

`23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

□ '22년 대비 '23년 단속실적

(단위 : 건, %)

구 분	`23년	`22년	증감(%)
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	41,951	32,760	▲ 28.06
안전기준 위반(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)	96,371	73,874	▲ 30.45
불법튜닝(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)	16,878	14,049	▲ 20.14
불법명의 자동차 단속(이전등록 위반자)	4,467	7,820	▽ 42.88
무단방치 자동차 단속	54,611	49,712	▲ 9.85
무등록 자동차 단속	4,095	5,275	▽ 22.37
번호판 영치실적	119,369	100,971	▲ 18.22
소 계	337,742	284,461	▲ 18.73

□ '23년 단속결과 조치현황

(단위 : 건)

구 분	적발대수	과태료	고발
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	41,951	10,783	1,517
안전기준 위반(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)	96,371	4,413	71
불법튜닝(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)	16,878	2,803	632
불법명의 자동차 단속(이전등록 위반자)	4,467	3,407	115
무단방치 자동차 단속	54,611	-	2,667
무등록 자동차 단속	4,095	3,568	8
번호판 영치실적	119,369	-	-
소 계	337,742	24,974	5,010

참고 2

안전신문고 앱 '자동차·교통위반' 신고방법

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→ 자동차·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

국민안전신문고 앱 실행 화면. 상단 메뉴에서 '자동차·교통위반'을 선택하고, '유형선택' 버튼을 클릭합니다.

② 신고유형 선택

자동차·교통위반 신고 유형 선택 화면. '불법등화, 반사판(지) 가림·손상'을 선택합니다.

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

불법등화, 반사판(지) 가림·손상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화면. ① 등화 착색, 등화 손상, 불법등화 설치 ex) 방전식 전조등, LED 전조등, 써치램프, 보조제 등등 추가설치, 등화장치 착색, 필름부착 등, ② 화물차 후부 반사판(지) 미설치 및 설치 불량, ③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. '확인' 버튼을 클릭합니다.

④ 사진·동영상 첨부 후 제출

신고 완료 화면. '제출' 버튼을 클릭합니다.